

외국인 주민에 관한 정부의 법률이 2012년 7월 9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외국인등록법이 폐지되어 외국인 주민도 일본인과 같이 주민기본대장법이 적용되어 『주민표』를 작성합니다.

주민표에 기재된 외국인주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장기 체류자 (체류카드교부 대상자) 관광 등 단기체재자 등을 제외한 적법으로 3개월을 넘게 일본에 주소를 소유하고 있는 분.
2. 특별영주자 (특별영주자증명서 교부대상자)
3. 일시보호허가자 또는 임시체류허가자 (일시보호허가서 또는 임시 체재 허가서가 교부된다.)
4. 출생으로 인한 경과 체재자 또는 국적 상실로 인한 경과체재자 (출생의 경우나 일본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60 일에만해서 재류자격 없이 재류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7월 9일부터 주소증명이 『등록원본기재사항증명서』에서 『주민표』로 바뀌었습니다.**

- 외국인주민의 주민표에는 「성명」 「통칭」 「생년월일」 「성별」 「주소」 「세대주성명・관계」 등 그외에 필요한 경우 국적 재류자격 재류기간 만료일 등도 기재됩니다.

성명에 포함된 한자는 중국 간체자나 오자 등에 대하여는 법무성 고시에 표시된 변환 룰에 의거 일본에 있어서의 정자로 변환하여 기재하게 됩니다. 앞으로 주민표에는 변환 전 성명문자 표기는 기재되지않습니다. 한자의 변환 룰에 대하여는 2011년 법무성 고시 제 582호에 표시되어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입국관리국 홈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 2012년 7월 9일 이전 주소 등의 이력은 새로운 「주민표사본」으로는 증명되지않습니다.

법 시행일 이전의 주소 이력이나 주소설정일, 성명이력, 가족등록이력 등은 주민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법시행 히이전의 주소나 성명의 이력이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서는, 폐지된 외국인등록법의 외국인등록원표가 생각되어, 이것은 출입국재류 관리 청에서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외국인등록원표를 확인하고 싶은, 복사를 교부하면 좋겠다고 할 경우, 공개 청구를 출입국재류 관리 청에 대하여 행하는 것이 됩니다.

문의처 및 , 청구서등의 제출처

出入国在留管理庁 (= 출입국재류관리청 )、総務課情報システム管理室 出入国情報開示係

〒160 - 0004 東京都新宿区四谷 1-6-1 四谷タワー13F 전화 : 03-5363-3005

외국인등록법 폐지 후 외국인등록원본 열람 청구에 관한 알림

<http://www.moj.go.jp/isa/applications/disclosure/foreigner.html> (일본어만)

사망한 외국인에게 관련하는 외국인등록원표의 복사 교부 청구에 대해서

돌아가신 외국인 분의 외국인등록원표는, 법에 의한 공개 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만, 폐지된 외국인등록법에 있어서의 외국인등록원표의 복사가 지금까지 행해 온 사회적인 역할을 고려하고, 상기의 출입국재류 관리 청의 출입국정보공개계는, 정해진 조건을 채울 때에, 행정 서비스의 일환으로서 복사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외국인 등록원본 사본 교부청구에

[http://www.moj.go.jp/isa/applications/disclosure/foreigner\\_death.html](http://www.moj.go.jp/isa/applications/disclosure/foreigner_death.html) (일본어만)

○ 이주 전입 등 주소변경 수속에는

이사를 한 분 전원 『재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 또는 당분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명서』 를 가지고 이사한 후 14 일 이내에 시민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재류카드』 등 뒷면에 새주소를 기입해 드립니다. 해외에서 온 경우는 입국한 것을 확인하므로 여권도 제시 바랍니다. 국내에서의 전입은 전주소지의 전출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와카야마시에서 전출하려면

사전에 전출신고를 하고 전출증명서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전출증명서는 이사 간 곳에서 전입신고 할때 제출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 분은

세대주와의 혈연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시청에서 확인되지않는 경우는 혈연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 바랍니다.

구 외국인등록법의 『외국인등록증명서』 는

『외국인등록증명서』 는 외국인등록법 폐지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새로운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 로 간주하여 유효합니다만 다음 표의 유효기간내에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 로 변경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유효기간이 지난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속히 수속하기 바랍니다.

특별영주자	중장기 재류자	
	영주자	영주자가 아닌 사람
『특별영주자 증명서』 신청장소 : 시청	『재류카드』 신청장소 :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	『재류카드』 신청장소 :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

<p>○16 세미만은 16 세 생일까지</p> <p>○16 세 이상은 외국인등록증명서의 차기 확인 신청 기준일(외국인등록증명서 사진 우측에 기재되어있는 시기)까지. 단 기준일이 3 년 이내인 사람은 2015 년 7 월 8 일까지.</p>	<p>○16 세미만은 16 세 생일 또는 2015 년 7 월 8 일 중에 빠른 날까지.</p> <p>○16 세 이상은 2015 년 7 월 8 일까지.</p>	<p>○16 세미만은 16 세 생일 또는 재류기간 만료일 중에 빠른 날까지.</p> <p>○16 세이상은 재류기간 만료일 까지.</p> <p>*재류자격 등 신청이 허가될 때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p>
--	---	--

그리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지역을 변경한 경우는 유효기간내라도 변경한 일부터 14 일 이내에 변경한 사실을 알 수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각각 신청처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이나 훼손된 경우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부신청에는 ①현재 외국인등록증명서 ②사진 1 장 4cm×3cm (16 세이상) ③여권 (있는 분) 이 필요합니다.

16 세 이상 인 분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합니다. 대리신청에 대하여는 상담바랍니다.

16 세 미만인 분은 동거의 가족이 신청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특별영주자 증명서』에 관한 신청에 대하여는 시청 시민과(전화 073-435-1027).

『재류 카드』에 관한 신청 등에 대해서는 오사카 출입국재류 관리국 와카야마 출장소 (전화 073-422-8778)

